#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795 발의연월일: 2025. 4. 14.

발 의 자:조인철·장종태·이개호

주철현 · 한정애 · 위성곤

고민정 • 문진석 • 박민규

노종면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법 위반사항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 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.

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국내 법인이 아닌 법무법인 또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·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 요함.

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, 국내대리인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으로써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두 텁게 보호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국내 법인을 설립·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(안 제32조의5제2항).
- 나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 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(안 제32조의5제3항).
- 다. 국내대리인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야 하며, 담당자는 국내대리인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, 방송통신 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(안 제32조의5제5항 신설).
- 라. 국내대리인의 업무인 이 법 위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 물품·서류 등의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(안 제76조제2항제6호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5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개"를 "공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"로 하고,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
- 1.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
- 2.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등이 임원 구성,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

국내대리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3. 제5항에 따른 담당자의 성명,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
-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담당자는 국내대리인,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등,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 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·변경의 방법·절차, 제3항에 따른 공개 및 통보 방법·절차, 제5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및 연락가능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제2호 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2호를 삭제한다.

- 6.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·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- 2의6.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중 제32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중에서 국

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의5(국내대리인의 지정) ①	제32조의5(국내대리인의 지정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	②
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.	
<u>&lt;후단 신설&gt;</u>	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
	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
	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
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	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
	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
	<u>지정하여야 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1.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
	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
	비스 제공자등이 설립한 국내
	<u>법인</u>
<u>&lt;신 설&gt;</u>	2.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
	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
	비스 제공자등이 임원 구성,
	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
	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
	<u>법인</u>
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	3
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	

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<u>공개</u>하여야 한다. <u><</u>후단 신 <u>설></u>

1.·2. (생 략) <신 설>

④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- ---공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<u>통보</u>------ 국내대리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- 1. 2. (현행과 같음)
  - 3. 제5항에 따른 담당자의 성명,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
  -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담당자는 국내대리인,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,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.
-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 내대리인 지정·변경의 방법 ·절차, 제3항에 따른 공개 및 통보 방법·절차, 제5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및 연락가능 조 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제76조(과태료) ① (생 략) 저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4의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2의5. (생 략) <u><신 설></u>
- 3. ~ 21. (생략)
- 22.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·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. ~ 25. (생 략)

④ (생략)

∥7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
1. ~ 4의4. (현행과 같음)
6.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
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
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③
1. ~ 2의5. (현행과 같음)
<u>2</u> 의6.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
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
<u>자</u>
3. ~ 21. (현행과 같음)
<u>&lt;삭 제&gt;</u>

④ (현행과 같음)